

하여 TV프로그램의 시청은 물론, 인터넷검색이나 영화 감상,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게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콘텐츠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TV방송이나 그 밖의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TV수상기를 통하여 이용하는 IPTV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이후 현재 KT(올레TV), SK브로드밴드(BTV), LG유플러스(U+TV)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로는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의 IPTV 가입자 수가 77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2013년까지 IPTV로 인한 언론피해를 다룬 언론조정중재사건은 아직 전무하다.

IV.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 따른 구제

1. 침해의 유형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언론피해는 다양하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인터넷매체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당한 경우에 언론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피해로는 대표적으로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의 침해, 프라이버시의 침해, 재산상 손해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명예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인터넷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¹¹⁾

인터넷매체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제가 가능하다. 당연히 허위보도나 편파보도, 과장보도 등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언론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¹²⁾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형법 제307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가해 인터넷매체에게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명예훼손이 위법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론조정중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청구권(정정보도·반론보도청구권 등)은 가해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2항 등 참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특칙이 적용된다(민법 제764조).¹³⁾

11) 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12) 실무상 언론조정중재신청건수의 약 90% 이상이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이다.

13) 헌법재판소 1991.4.1. 선고 89헌마160 전원재판부는 민법 제746조를 근거로 “사죄광고”를 명하게 되면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되므로 사죄광고의 강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최근 선고된 인터넷매체 관련 명예훼손 판결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포털사이트)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게시공간에 게재하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기사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그 기사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대법원은 보았다.¹⁴⁾

(2) 신용훼손

신용이란 개인의 지불능력과 지불의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가리킨다. 신용훼손도 중요한 언론조정중재신청의 사유가 된다.¹⁵⁾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처벌된다(형법 제313조). 또한 신용도 넓은 의미에서는 명예의 일종으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14)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A와 교제하다가 자살한 여성 B의 어머니가 B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글을 올리자 B의 미니홈피의 방문자 수가 급증하게 되고, 동아일보에서 자살한 여자 B와 남자친구 A의 교제 및 B의 자살경위를 기사화하여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와 같은 인터넷포털사이트는 동아일보로부터 그 기사를 전송받아 자기의 뉴스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이 많이 게시되고, 또한 카페와 커뮤니티까지 생겨 A의 신상정보(성명, 전화번호, 출신학교, 직장 등), 사진 등은 물론, B를 추모하고 A를 비난하는 글이 수없이 많이 게시되어 A가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15) 실무상 2011년부터 신용훼손은 재산상 손해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다.

(3) 초상권의 침해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초상권은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초상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성명권, 명예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본다. 또한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751조가 초상권의 침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얼굴이나 그 밖의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를 비롯하여,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여 공중에게 공표하거나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경우와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그 사진을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¹⁶⁾

16) 유명인의 초상이 무단이용되어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초상권을 인격권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재산권으로 파악하며,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을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부르며, 민법상 보호된다.

초상권의 침해가 있으면 당연히 언론조정중재에 의하여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초상권의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침해 인터넷언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과 위자료가 있고,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통상은 정신적 손해이고 그 배상액은 침해행위의 태양, 정신적 고통의 정도,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리고 초상권도 인격권의 하나로서 절대적,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금지청구가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해예방청구로서는 초상을 촬영한 필름이나 사진 등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배제청구로서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필름이나 사진을 게재한 인터넷게시물 등의 파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성명권의 침해

성명권이란 사람이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갖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한다. 근래에 이르러 인터넷매체 등의 급격한 발달로 개인의 성명이 무단으로 타인에 의하여 참칭·모용되거나 혹은 조건에 반하여 인터넷광고 등에 이용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성명권의 침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시 인터넷매체에 의하여 성명권이 침해되면 언론조정중재를 통하여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성명권의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¹⁷⁾ 비록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나 학설은 이견 없이 성명권을

17) 입법례로는 독일민법 제12조나 스위스민법 제29조와 같이 성명권(Namenrecht)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성명은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기초이며 그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고 인격의 발로이므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로부터 당연히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성명권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한다.¹⁸⁾ 그러므로 만일 성명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비록 개인이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익이나 이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 있고,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하지 아니한 한 그 성명의 표시는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과정에서 그 실명의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설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더라도 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¹⁹⁾ 역시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 제2호도 명문으로 성명권의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터넷매체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서 진실한 내용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판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용자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의 운영자가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그 연예인의 성명권을 침해한 경우로 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 유명 스포츠선수의 성명을 일정한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에 그 선수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가 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역시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경우에는 프로야구선수의 성명권을 침해한 경우로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4.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19)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5) 음성권의 침해

음성도 인격적 가치의 하나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의문이 없다. 일반적으로 독백, 대화, 인터뷰, 강연 등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 재생, 방송 및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 즉 자신의 말에 대한 권리(Recht am eigenen Wort)를 음성권이라고 한다. 현재 도청이나 비밀녹음 등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음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법률상 음성권을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음성의 녹음 여부에 대한 결정이나 음성의 재생·배포 및 방송 여부에 대한 결정에 관한 권리나 대화내용의 인용·편집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음성권이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서 인정되어 보호된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인터넷매체로 인한 음성권의 침해도 언론피해에 해당하므로 언론조정중재신청의 대상이 된다.

(6)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생활 내지 사적 사실(private facts)이나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자명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스스로 공포하거나 토로하기 전에는 타인과 공유될 수 없고, 누구로부터의 침입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의 최종적인 영역으로서의 내밀영역(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 제3자의 인지 및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인간의 비밀스런 생활영역(비밀기록이나 비밀대화), 친밀한 범위 내의 생활영역(예를 들면, 가족 및 가정이나 친지,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생활영역이나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적인 정보영역) 등은 프라이버시로서 보호된다. 물론, 공개된 내용이 진실 혹은 사회적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사생활의 공개가 전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되지는 아니한다.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항이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인의 입장에 선 경우에 공개를 바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를 전제로 그 사생활에 대한 공개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된다.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야기되고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로 되고,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²⁰⁾ 역시, 인터넷매체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언론조정중재의 대상이 된다.

(7) 재산상 손해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이 침해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이외에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 구제절차의 유형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예컨대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성명권·음성권·프라이버시의 침해, 재산상 손해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는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 예컨대 1980년 ‘사랑과 야망’이라는 드라마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A여배우에 대하여 인터뷰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뷰한 경우처럼 꾸며 사생활을 보도한 여성조선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4. 선고 2006가합24129 판결).

피해자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에 관하여 해당 인터넷매체와 직접 협의할 수도 있고,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설립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이나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세 가지 절차 중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도 무방하므로, 인터넷매체와의 협의 없이 곧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전치주의가 아니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출처: <http://www.pac.or.kr>)

(1) 조정

본래 조정(mediation)²¹⁾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가 쉽게 협상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 방식을 가리킨다. 조정에서는 분쟁 당사자가 협상에서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다. 조정을 중개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협상을 도와줄 권한만을 가질 뿐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언론조정에서는 별도로 구성된 관할 중재부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21) 調停은 용어상 調整과 구별하여야 한다(예컨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3호는 斡旋, 調停, 裁定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調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타협방안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타협방안의 수락을 권고하고, 분쟁 당사자가 그 타협방안을 수락하여야 비로소 분쟁이 해결된다. 그러므로 언론조정에서 중재부는 분쟁을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정안에 의하여 분쟁해결을 알선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만일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²²⁾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이 되어 조정은 전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언론조정에서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기각, 각하, 취하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각하

본래 각하(却下)란 민사소송상 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본안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언론조정에서도 관할 중재부는 조정신청이 부적법할 때에는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1항).

② 기각

기각(棄却)이란 소송상 신청의 내용(예컨대,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중국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 하여 배척하는 제도이다. 기각은 일종의 본안판결이므로 각하와 구별된다. 언론조정에서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기각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2항).

22) 언론중재법 제23조는 조정의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취하

신청인은 조정신청 후에 임의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고(언론중재법 제19조 제2항), 만약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로 본다(언론중재법 제19조 제3항).

④ 조정성립(합의)

분쟁당사자가 관할 중재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된다. 조정의 결과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3조 제1호).

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재부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1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관하여는 분쟁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언론중재법 제23조 제3호),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전문). 만약 분쟁당사자 한쪽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직권조정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언론중재법 제22조 제3항 후문).

⑥ 조정불성립

중재부는 당사자 간 합의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조정불성립결정을 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1조 제3항).



(출처: <http://www.pac.or.kr>)

통계를 보면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언론조정신청건수는 합계 23,054건이고, 조정성립건수는 7,726건(33.5%), 직권조정결정은 동의 619건(2.7%), 이의 471건(2%), 조정불성립결정은 3,645건(15.8%), 기각은 807건(3.5%), 각하는 114건(0.5%), 취하는 9,672건(42.0%)에 해당한다.²³⁾ 그리고 2013년 인터넷신문으로 인한 언론피해에 관한 조정신청건수는 총 1,130건이고, 조정성립이 420건, 직권조정결정이 49건, 조정불성립결정이 139건, 기각이 5건, 취하가 517건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2013년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를 둘러싼 조정신청건수는 총 369건이며, 조정성립 85건, 직권조정결정 3건, 조정불성립결정 15건, 기각 1건, 취하 265건이다.²⁴⁾

23) <http://www.pac.or.kr> 통계자료 참조

(2) 중재

중재(Arbitration)는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절차 및 사인인 제3자(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기하여 중재인이 행한 중재판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중재는 흔히 ‘사적 재판’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중재는 최종적인 결정이 분쟁당사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조정이나 화해와 구별되며, 또한 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중재계약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재는 일단 중재인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가 무조건 그 중재판정에 복종하여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방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주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의 조정과는 크게 다르다.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분쟁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

24) 2013년도 매체유형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출처: <http://www.pac.or.kr>-보도자료).
(2013.1.1. - 2013.12.31.)

매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신 문	522 (21.5%)	236	39	80	4		163
방 송	288 (11.8%)	136	13	41	10	1	87
잡 지	10 (0.4%)	5	3	1			1
뉴스통신	112 (4.6%)	32	4	19		1	56
인터넷신문	1,130 (46.4%)	420	49	139	5		517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	369 (15.2%)	85	3	15	1		265
기타	2 (0.1%)	2					
계	2,433 (100%)	916 (37.6%)	111 (4.6%)	295 (12.1%)	20 (0.8%)	2 (0.1%)	1,089 (44.8%)

24조 제1항). 언론중재신청은 조정절차의 계속 중에도 할 수 있고, 그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경우로 본다(언론중재법 제24조 제2항). 그리고 언론중재에서는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등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고, 언론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언론중재법 제25조 제1항). 언론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언론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25조 제2항, 중재법 제36조 참조).



(출처: <http://www.pac.or.kr>)

언론중재사건의 수는 언론조정사건에 비하면 많지 않다. 통계를 보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언론중재신청건수는 합계 581건이고, 처리결과로서는 중재결정이 526건, 중재화해결정이 48건, 기각이 1건, 취하가 6건이다. 그리고 2013년도 언론중재신청현황을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출처: <http://www.pac.or.kr>-보도자료).

<2013년도 언론중재신청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3.1.1. - 2013.12.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정정	77	77				
반론	59	59				
추후	33	33				
손해배상	21	19	2			
계	190	188	2			

<2013년도 언론중재신청 침해유형별 청구건수 및 처리결과>

(2013.1.1. - 2013.12.31.)

침해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188	186	2			
프라이버시	2	2				
계	190	188	2			

(3) 소송

인터넷매체에 의한 언론피해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로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언론조정중재절차를 통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 다만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이 있어서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보도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참조),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참조) 제기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3항). 그리고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한 제1심 재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5항).

① 정정보도청구의 소

정정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²⁵⁾ 정정보도청구재판에서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 위치, 방식 등을 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 제한이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²⁶⁾

②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

정정보도청구와 달리 반론보도청구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보도에 의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가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실적 주장을 게재하여 주기를 청구하는 반박권이어서 인터넷매체의 입장에서는 종전 입장을 바꿀 필요 없이 지면만 할애하여 주면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으로

25) 본래 정정보도청구소송에 관하여도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의 본문 전단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06.6.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한 후 2009년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정정보도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26) 대법원 2013.2.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종결되어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사정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매체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인터넷매체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③ 손해배상의 소

인터넷매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피해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터넷매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내용으로는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의 청구는 물론, 침해정지청구와 침해예방청구가 가능하고(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 그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

④ 시정권고

시정권고란 언론의 보도내용을 심의하여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는 결정을 가리킨다(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 다만 시정권고는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언론중재법 제32조 제3항). 시정권고제도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32조는 시정권고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며, 시정권고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고 본다.²⁷⁾

27) 헌법재판소 2006.06.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

3. 구제수단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네 가지가 있다. 예컨대, 2013년 언론조정사건을 청구유형별로 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195건(49.1%)으로 가장 많고, 손해배상청구 784건(32.2%), 반론보도청구 274건(11.3%), 추후보도청구 180건(7.4%)의 순이다.²⁸⁾

<2013년도 청구권별 처리현황>

(2013.1.1. - 2013.12.31.)

청구명	청구건수	본안심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심리전	심리중
정정	1,196	909	512	29	39(2)	155(8)	11	2	274(226)	174(109)
반론	274	189	129	8	1	18	3	0	82(71)	33(22)
추후	180	28	18	0	2	1	0	0	152(149)	7(7)
손해배상	783	559	257	17	15	121(6)	6	0	218(188)	149(112)
계	2,433	1,685	916	54	57(2)	295(14)	20	2	726(634)	363(250)
(%)	100		37.6	4.6		12.1	0.8	0.1	44.8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

(1) 정정보도

- ①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허위보도를 한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언론사가

28) <http://www.pac.or.kr> 보도자료 참조

스스로 해당 기사가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 정정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하여 주기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우선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사실적 주장, ii) 비진실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i)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만이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경우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언론 보도는 대개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이 혼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구별기준 자체가 일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양자를 구별할 때에는 당해 원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원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당해 원보도가 게재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²⁹⁾

ii)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언론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 언론 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므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³⁰⁾ 또한 복잡한 사실

29)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30)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³¹⁾

- ② 허위의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때에 피해자는 기존의 민·형사상 구제체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민·형사상의 구제제도에서는 인터넷매체 측에 고의·과실이 없거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바로 피해구제가 실현되지 못하면 피해자는 언론보도의 전과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즉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여 야기되는 심각한 피해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이 필요하고, 그 적합한 구제책은 인터넷매체나 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바로 책임추궁이 아니라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데에 기존의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추궁과 별도로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정보도청구에는 형사책임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와는 달리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도록 규정한

31)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275 판결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권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권리로서 그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매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일정한 경우에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인정하고 있고,³²⁾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참조)에 비하여 제소기간도 현저히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난 때에도 더 이상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정보도의 방법도 동일 지면에 동일 크기로 보도문을 내도록 하여 원래의 보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고 있지 않다.³³⁾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이 인터넷매체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³⁴⁾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³⁵⁾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32) 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i)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ii)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iii)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iv)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v)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취제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공개회의 또는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의 거부예에 해당할 수 없다)에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33) 물론 게재시간(예컨대, 24시간, 48시간, 72시간 등), 게재위치, 게재글자의 크기나 글자체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34) 비록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할 수 있고, 예컨대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규정,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 등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한 입법에 해당한다.

35) 헌법재판소 2006.06.29. 선고 2005헌마165, 314, 555, 807, 2006헌가3(병합) 전원재판부가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합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 없어도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언론의 자유와 사인의 명예 또는 권리가 서로 충돌할 때에는 양자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권리가 비록 허위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그 정정보도청구제도로 인한 언론의 위축효과는 최소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 ④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한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인터넷매체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연인, 법인 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 등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터넷매체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를 말하므로, 언론보도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제3자의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불가능하다.³⁶⁾

(2) 반론보도

- ①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의 사실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 인터넷매체에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을 게재(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보통 조정대상기사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쉬운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반대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한다.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권리는 (i)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36)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이 주어질
 야 함이 마땅하고,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
 에도 잘 부합할 수 있고, (ii)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
 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반대 주장까
 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대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태도가 진실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는 취지에서 인정된다고 본다.³⁷⁾ 그리고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을 규정한 제21조 제4항
 등의 헌법적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있다.³⁸⁾ 결국, 반론보도청구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주관적 의미와 함께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³⁹⁾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근거를 둔 권리임과 동시에 단순한
 주관적 권리를 넘어서는 권리이므로 가능한 한 그 실현이 충분히 보장되
 어야 한다. 특히,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권리는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주기를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
 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⁴⁰⁾ 나아가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37)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65 결정; 헌법재판소 1996.4.25. 선고 95헌바25 결정 등 참조.

38) 헌법재판소 1991.9.16. 선고 89헌마165 결정 참조

39)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37278 판결; 대법원 2000.3.24. 선고 99다63138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등 참조

40) 대법원 1986.1.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대법원 1998.2.24. 선고 96다40998 판결; 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⁴¹⁾ 그러므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위험성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되지만, 그 위험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이라고 보아야 한다.⁴²⁾

물론, 인터넷매체도 헌법 제21조에 기하여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터넷매체에 반론보도 게재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터넷매체가 가지는 편집의 자유가 제한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인터넷매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인터넷매체의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권리는 인터넷매체의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로 충돌하는 두 헌법적 이익 사이의 갈등은 상충하는 이익 모두가 최대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두 이익이 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계획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⁴³⁾

- ②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다만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자가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로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제도가 본래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허위 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41) 대법원 1991.1.15. 선고 90다카25468 판결 참조

4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43)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대법원 2009.01.15. 자 2008그202 결정 참조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지는 아니하므로,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태도는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경우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할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경우로서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청구까지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허위임을 아는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인터넷매체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 ③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진다.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그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지만,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되고, 원보도에 대한 반론내용은 원보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 원

보도를 보충하는 내용, 원보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내용, 반론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정당성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나 증빙으로서의 새로운 사실 등도 포함될 수 있다.⁴⁴⁾ 다만 소송에서 법원이 반론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반론보도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다.⁴⁵⁾

(3) 추후보도

인터넷매체에 의하여 범죄혐의자 또는 범인으로 보도된 후에 그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이나 무죄판결과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인터넷매체에 대하여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 추후보도에는 추후보도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하며(언론중재법 제17조 제2항),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언론중재법 제17조 제4항).

(4) 손해배상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매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한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1항). 그러므로 인터넷매체의 언론

44)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45)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피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요구되고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생겨야 한다.

① 재산상 손해의 배상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 재산상 손해 내지 재산적 불이익을 입으면 당연히 재산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에서는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算定)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

② 위자료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서는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즉 이른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격권의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로 인격권의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된다.

인터넷매체에서의 기사에서 특정되거나 그 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피해자만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매체를 통한 기사의 내용에서 직간접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기사의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반 독자는 비록 기사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사로 인하여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언

론중재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내지 인격적 이익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인터넷매체에 의한 기사는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사로 인하여 일반 독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당해 독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임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 독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기사를 게시한 인터넷매체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인터넷매체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인터넷매체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독자로서는 인터넷매체의 기사로 인하여 비록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인격권 등 법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⁴⁶⁾

③ 침해정지나 침해예방의 청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⁴⁷⁾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의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 예방

46) 일반시청자 A와 B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A와 B는 일반시청자로서 방송에서 지적 내지 특정되거나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방송으로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설령 A와 B가 방송으로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견해대립으로 불화와 갈등을 겪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47) 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정지·방해 등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역시 언론중재법 제30조 제3항도 명문으로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언론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매체에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매체에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침해정지나 침해예방의 청구를 하는 경우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법 제30조 제4항).

④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정정보도청구나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언론중재법 제26조 제4항), 별도로 인터넷매체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4조와 같은 취지에서 언론중재법 제31조도 명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인터넷매체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64조나 언론중재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 사죄광고를 포함하는가가 문제된다.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방법으로서의 사죄광고는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므로 사죄광고나 사과표시의 게재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물론, 인터넷매체가 자발적으로 사과

표시를 게재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언론중재법 제3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예시된 ‘정정보도의 공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래 언론중재법 제14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에는 인터넷매체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31조의 위치나 그 내용으로 볼 때, 언론중재법 제31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는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원상회복조치로서의 정정보도라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언론중재법 제31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일환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에 있어서도 고의·과실과 같은 귀책사유나 위법성의 요건이 배제된다고 본다면, 고의 또는 과실 및 위법성을 불법행위책임의 근본요소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법의 근본체계와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 보도라 하더라도 적법한 보도활동을 한 언론에 대하여 면책의 가능성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게 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심히 위축시켜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결국, 언론중재법 제31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일환으로서 인정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의 공표”의 요건으로는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